대구광역시동구인사위원회 공고 제 2026-29호

대구광역시 동구 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대구광역시 동구 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9월 29일

대구광역시동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등급	채용 인원	직무내용	임용기간	근무시간
육아종합 지원센터 운영요원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9급 상당)	1명	• 장난감도서관 및 체험나라 운영, 하늘공원 등 기타 놀이시설 운영 (관리, 소독 등 포함) • 영유아 및 부모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업무 추진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련 기타 업무 지원	2년 ('26. 11. ~ '28. 11.)	주35시간 (일 7시간)

*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에서 연장가능하며 **임용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음**

2.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법」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연령 : 18세 이상 (2008. 12. 31. 이전 출생한 사람)
- 지역·성별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관계 법령에 의해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 포함)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채용분야 자격요건(기준일 : 시험 공고일)

채용분야	채용자격기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요원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인정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법인, 사회복지기관·시설 등에서 보육·육아 관련 실무경력(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

자격요건 적용 유의사항

1. 경력증명서 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가 상세히 명시되어야 함
2. 관련 기업체
 · 법인인 사업자로서 법인등기부의 목적사업에 해당분야 관련한 사업을 포함하는 경우
 · 개인인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종목에 해당 분야 관련한 사업을 포함하는 경우
3. 전임근무의 경우 경력의 전부를 인정하며, 시간선택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함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일반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3년,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응시자의 경우 10년이 지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항)

4. 근무조건 및 보수 수준

○ 근무조건 : 주5일 35시간 근무(1일 7시간)

○ 보수 : 연봉제로 하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책정범위에서 결정

채용등급	상한액	하한액	비 고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9급 상당)	54,678천원	-	※ 신규임용 시 연봉 하한액 책정이 원칙이나, 하한액이 없는 9급(상당)의 경우 상한액의 52%로 연봉책정 예정 **: 24,879천원(주 35시간 근무 적용)**

○ 기타 복무관련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의함

○ 기타 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기타 복무관련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의함

○ 기타 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시험일정 및 방법

○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일시	면접전형	
			채용분야	시험일시
2026. 10. 6.(화) ~ 10. 8.(목)	서류전형	2026. 10. 27.(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요원	2026. 10. 30.(금)

○ 최종합격자 발표

채용분야	일 시	장 소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요원	2026. 11. 2.(월)	대구광역시 동구청 홈페이지

※ 기관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변동 시 응시자에게 개별 통보 예정)

○ 1차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기준 : 실무경력(45점), 직무수행계획서(45점), 자기소개서(10점) 등 3개 항목(100점 만점)

- 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다음단계 시험 일시·장소 등 개별통지)

○ 2차시험 :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평가
- 면접시험 평가요소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5개 분야 100점 만점(분야별 20점)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 평정 성적이 최고득점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

※ 불합격 기준 :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 **응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평가결과를 종합한 응시자 본인의 상·중·하의 개수 공개*(단, 면접위원별·평가요소별 상·중·하 개수는 비공개 대상)**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의안번호: 제2023-225호 / 의결: 2023. 2. 28.)

- 적격자가 없을 경우(모두 불합격인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

- 대구광역시 동구 홈페이지(www.dong.daegu.kr) 공고 및 개별통보(최종합격자에 한함)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대구광역시 동구 홈페이지(www.dong.daegu.kr)에서 다운로드

○ 접수기간 : 2026. 10. 6.(화) ~ 10. 8.(목) 09:00~12:00, 13:00~18:00

○ 접 수 처 : 대구광역시 동구청 3층 행정지원과 인사팀(☎053-662-2234)

○ 접수방법 : 방문접수(근무시간 내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우41185)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207, 동구청 행정지원과 인사팀 임기제 채용 담당자
- **등기 우편접수 시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통상환증서를 구입·동봉**
- 우편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한 경우 응시표는 문자메시지로 갈음

○ 수 수 료 : 5,000원

※ 동구청 1층 민원여권과 민원접수창구에서 인증기 날인

7.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공통사항 (필수 제출)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서식 제1호
	응시원서 ※ 방문접수 : 동구청 1층 민원여권과에서 수입증지 첨부(5,000원) ※ 우편접수 : 우체국 통상환증서 첨부(5,000원)	별지서식 제2호
	이력서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 없는 사항은 인정하지 않음)**	별지서식 제3호
	자기소개서	별지서식 제4호
	직무수행계획서	별지서식 제5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서식 제6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별지서식 제7호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증명서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증명서 발행처의 관인 또는 직인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이 상세하게 기재가 안 될 경우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별지 서식 제8호) 추가 제출** **※ 전일근무(1일 8시간)가 아닐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되어야 함** ※ 이력서상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 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어로 된 증빙서류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최종합격 시는 대사관 및 아포스티유 공증을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경력증명서 증빙용**
	주민등록초본 1부(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하여 제출)	
	보육교사 자격증 사본 1부	2급 이상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졸업증명서 1부 또는 학위증서 사본 1부	
	학위논문요약서 1부(임용예정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취득자)	별지서식 제8호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 경력증명서상 직무내용 기재가 안 될 경우 등 추가 첨부**	별지서식 제9호
	업무관련 자격증 또는 외국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	

8. 기타(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기재 후 응시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응시원서 상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 제출된 서류일체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각종 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 적임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채용통지 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신체검사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로 갈음이 가능합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할 수 있으며, 추가합격자 발표는 개별 유선 통보와 함께 대구광역시 동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후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당초 지원자는 기 접수된 원서로 갈음함)**

○ 지방공무원법 제43조의3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 전까지 대구광역시 동구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분야	담당부서	연락처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요원 직무내용	아동청소년과	☎ 053-662-3521
채용절차 관련 문의	행정지원과	☎ 053-662-2234

【붙임1】

직 무 기 술 서

직무분야	임용예정직급(직류)	선발예정인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요원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1명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대구광역시 동구	아동청소년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주요업무	○ 장난감도서관 및 체험나라 운영, 하늘공원 등 기타 놀이시설 운영 (관리, 소독 등 포함) ○ 영유아 및 부모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업무 추진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련 기타 업무지원

필요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 (직급별 역량) 기획력, 팀워크 지향, 의사소통능력, 조정능력 ○ (직력별 역량) 영유아 발달 이해 및 적용 능력, 소통과 공감능력

필요지식	○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기획능력 ○ 영유아 발달 이해에 대한 기초 및 전문지식습득 ○ 4차 표준보육과정에 근거한 영유아 놀이프로그램 개발 및 공간구성에 대한 지식 ○ 각종 문서 및 전산 관련 작업에 대한 지식습득

응시 자격 요건	**관련분야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요원**	
	경력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인정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법인, 사회복지기관·시설 등에서 보육·육아 관련 실무경력(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